

의안 번호	제3682호
----------	--------

## 김포시 인공지능(AI) 기본조례안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0월 10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0월 2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### 2. 제안이유

-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인공지능(AI)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6조)
- 나. 인공지능(AI)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 및 제8조)
- 다. 인공지능(AI) 추진사업 및 교육프로그램 규정 마련(안 제9조 및 제10조)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요지 : 생략

### 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조례안 본문 제3조 2호의 “지역 신체적 조건” 을 문법상 올바르게 “지역, 신체적 조건” 으로 위원회 차원에서 자구 수정하였음. 향후 동일한 문구상의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.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조례안 1부.

## 김포시 인공지능(AI) 기본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김포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다.

**제3조(기본원칙)**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1.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.
2.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, 나이, 인종, 민족, 지역, 신체적 조건, 종교, 경제적 사정,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,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.
3.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①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·

감독할 수 있으며,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,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,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**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6조(종합계획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김포시 인공지능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
2. 인공지능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자원 조달
3.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 방안
4.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 준수 사항
5.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·경제·문화 등 각 사회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 할 수 있다.

**제7조(인공지능 위원회 설치 및 기능)** ① 시장은 인공지능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인공지능(AI)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한다.

1. 종합계획 및 각종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인공지능 정책의 공정성·투명성·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, 문화,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
4. 인공지능윤리의 준수·확산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5. 인공지능산업 및 인공지능 융합산업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
6.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업무자동화 및 행정 효율화에 관한 사항
7. 인공지능 개발·활용과 관련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8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인공지능 총괄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.

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인공지능 업무 관련 실·국·소장
2. 인공지능의 과학·기술·산업·경제·행정·법률 등의 분야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
3. 공공데이터 및 빅데이터에 관련 학위 또는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
4.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인공지능 총괄업

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.

⑦ 그 밖에 위원회 구성, 운영 및 수당·여비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」를 따른다.

**제9조(추진사업)** 시장은 인공지능의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대시민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 개발사업
2. 행정업무 지원용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사업
3. 인공지능 기반 중앙부처 공모사업 또는 시범사업
4.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10조(교육프로그램)** 시장은 인공지능의 이해도 및 활용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, 시민,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.

**제11조(협력체계 구축)**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12조(포상)** 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.

1.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·단체
2.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·단체

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「김포시 포상조례」에 따른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